

종합감사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6년 경상북도포항의료원 —

2026. 5.



## □ 처분요구일람표

1.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 (시정)	1
2.	징계관련 규정 정비 소홀 (시정)	6
3.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비율 미준수 (주의)	9
4.	의료기기 구매할인 미흡 (주의)	12
5.	□□□ 구매 계약기간 연장 부적정 (주의)	15
6.	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19
7.	복무관리 부적정 (시정)	22
8.	마약류 관리 업무 철저 (시정)	25
9.	외부강의 및 겸직허가 운영 부적정 (시정)	28
10.	별관 ◆◆◆◆ 및 ▼▼▼▼▼ 구축공사 추진 부적정 (시정)	31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포항의료원  
관 계 부 서 ○ ○ ○ ○ ○  
내 용

경상북도포항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에서는 직원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23년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총 44차례의 채용공고 등을 하여 직원 85명을 채용하였다.

### 1. 병역 미필자에 대한 응시 부당 제한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Ⅲ. 직원의 인사, ① 신규채용 및 의료원 「인사규정」 제17조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원은 직원을 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병역 등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의료원은 직원 채용을 총 40차례 실시하면서 공고문 응시 자격에 “남자의 경우 군 필한 자(면제자 포함)”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다.

그 결과 의료원은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남성의 응시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채용 기회의 형평성을 저해하였다.

## 2. 동일 채용시험 전형단계별 심사위원 중복 위촉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Ⅲ. 직원의 인사, ④ 시험의 방법에 따르면 동일한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출제·채점위원, 면접시험위원, 서류전형 시험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원은 동일한 채용시험에서는 전형 단계별로 심사위원을 중복하여 심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의료원은 「인사규칙」 제10조에 시험위원을 인사위원으로 정하여 총 23차례의 채용 과정에서 동일 시험의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심사위원을 모두 인사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행정안전부 지침에 위배되게 전형 단계별 심사위원이 중복되도록 운영하였다.

그 결과 특정 위원에 의한 평가 영향력이 과도하게 반영될 우려가 있는 등 채용 절차 전반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3. 채용 시 가산점 기준의 내부 규정 정비 소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Ⅲ. 직원의 인사, ① 신규채용 및 ③

채용시험의 공고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시험의 요건,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는 자체 인사규정으로 정하되, 개별 채용별로 그 절차와 방법을 기관장 등이 달리 정하도록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채용공고 내용에 가점 기준 등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자체 인사규정에 직원 채용과 관련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모든 채용을 일관되게 운영하여야 하며, 가산점에 대한 세부사항도 인사규정으로 정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의료원은 직원 채용을 총 41차례 실시하면서 공고 내용에 추가 제출 서류로 가점 대상자(장애대상, 보훈대상) 증빙서류(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및 복지카드 사본)만 기재되어 있고 공고문을 포함한 의료원 규정 및 채용 계획에는 가산점수 부여 방법 등 세부 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 결과 가산점 부여 기준과 방법이 명확히 규정 및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이 이루어짐에 따라 평가의 일관성과 객관성이 저해되었다.

#### 4. 퇴직자 기간제 채용절차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Ⅲ. 직원의 인사, ① 신규채용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원 신규채용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의료원 「인사규정」 제17조 제6항에 따르면 원장은 공고예정일 15일 전까지 채용계획을 경상북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의무인력의 채용,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 등 경상북도의 사전 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후에도 통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원은 직원 신규채용 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시험을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시에는 경상북도의 사전 동의를 있는 경우에 통보기한을 단축할 수는 있으나 공고 예정일 전까지 협의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의료원은 아래 [표]와 같이 정규직 퇴직자를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 하면서 비공개로 진행한 사실이 있으며 직원 채용 시에 경상북도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는데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표] 정규직 퇴직자 계약직 채용 현황

구 분	임용일시	채용자	채용 사유	비 고
계약직	△△△△. △. △.	○○○	정년퇴직자(◆◆직 ○○○○○) 재고용	
계약직	◎◎◎◎. ◇. ◇.	☆☆☆	정년퇴직자(◆◆직 ○○○○○) 재고용	
계약직	◇◇◇◇. ♠. ♠.	♠♠♠	정년퇴직자(♣♣♣부 ●●●● 퇴직) 재고용	

※ 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의료원은 정규직 퇴직자를 공개경쟁 및 경북도의 협의절차 없이 계약직으로 채용함으로써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법령 및 지침의 취지를 훼손하였다.

####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포항의료원장은

- ① 앞으로 직원 채용 시 「고용정책기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병역 이행 여부 등 직무와 무관한 불합리한 응시자격 제한을 두지 않도록 채용공고 기준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동일 채용시험에서 전형 단계별 심사위원이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의료원

「인사규칙」을 개정하여 심사위원 구성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③ 가산점 부여 기준 및 방법 등 채용 관련 사항을 인사규정에 반영하고, 채용 공고 시 이를 공개하여 채용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시정)

④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포함한 모든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경상북도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④ 관련자 AAA, BBB을 **훈계**(의료원 규정상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징계관련 규정 정비 소홀  
소 관 청 경상북도포항의료원  
관 계 부 서 ○ ○ ○ ○ ○  
내 용

경상북도포항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에서는 징계와 관련하여 의료원 「인사규정」 등으로 자체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 1. 징계의 효력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IV. 투명한 윤리경영, ② 징계 등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그에 따른 임금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을 참고하여 자체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은 정직 기간 중에 출근하거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원은 강등 처분을 받은 직원이 출근하거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하며 감봉 처분 시에는 감봉기간 동안 월별 지급되는 임금 총액의 10분 1을 초과하여 감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의료원은 아래 [표]와 같이 「인사규정」 제53조에서는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의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고 되어 있다.

[표] 징계(강등)의 기준

징계종류	포항의료원 인사규정		적정 기준		비고
	직무제한	보수	직무제한	보수	
강 등	3개월간	보수의 3분의2 감	-	전액 감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그 결과 강등 처분 기간 중 보수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직에 준하는 제재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

## 2. 징계 기준 양정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IV. 투명한 윤리경영, ② 징계 등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그에 따른 임금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을 참고하여 자체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음주운전에 및 성비위에 대한 징계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의결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원에서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의 개정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의료원 「인사규정」 등을 개정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의료원 「인사규정」을 점검한 결과 성비위(성폭력범죄 세부기준, 음란물 유포 처벌기준), 음주운전(자전거 등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음주운전 은닉·방조 처벌기준),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담수령 징계기준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성비위 및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이 지침과

일치하지 않게 운영되어 징계의 형평성과 일관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포항의료원장은

강등, 성비위, 음주운전 등 징계기준이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부합하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비율 미준수  
소 관 청 경상북도포항의료원  
관 계 부 서 ○ ○ ○ ○ ○  
내 용

경상북도포항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에서는 출장 등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업무용 차량을 구매 또는 임차하여 운행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 내지 제5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5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은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계획 제출 대상 회계연도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6대 이상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15 및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조에 따르면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을 가중평균하여 100퍼센트<sup>1)</sup>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고

1)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비율은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승용자동차인 경우 전기차 1.5, 수소차 2.0)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

$$\text{구매·임차 실적(\%)} = \frac{\sum(\text{해당연도에 구매·임차한 제1종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대수} \times \text{환산비율})}{\text{해당연도에 구매·임차한 자동차 대수}} \times 100$$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별표 15]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등은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비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에서는 2023. 1. 9. 의료원에 ‘2022년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제출 및 2023년 업무편람 등 배포’ 공문을 송부하면서 의료원을 포함한 저공해차 의무구매·임차 대상기관은 계획연도에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차량의 100% 이상을 제1종 저공해자동차(수소차, 전기차)로 구매·임차하도록 한 바가 있다.

따라서 의료원에서는 구매 또는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대수가 2021년 기준 6대 이상<sup>2)</sup>이므로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비용을 준수하기 위해 2023년에 새로 자동차를 구매·임차할 때에는 수소차나 전기차로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의료원에서는 2023. 7. 20. 직원업무용 차량을 임차하면서 수소차 또는 전기차가 아닌 일반차량을 임차하였다.

그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비용(100퍼센트)이 준수되지 아니하였고, 2024. 4. 29. 환경부<sup>3)</sup>로부터 과태료(100만원) 부과 사전통지를 받고 과태료를 납부<sup>4)</sup>하게 되었다.

##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포항의료원장은

① 앞으로 신규 차량을 구매·임차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2) 2021년 기준, 사용차량 6대 보유(구매 2대, 임차 4대, 휘발유·경유차 6대)

3)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1324(2024. 4. 29.)

4) 의견제출 기한(2024. 5. 13.) 내 자진 납부하여 20% 경감받은 80만원 납부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비율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② 관련자 CCC는 **혼계**(의료원 규정상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의료기기 구매할인 미흡  
소 관 청    경상북도포항의료원  
관 계 부 서    ○ ○ ○ ○ ○  
내 용

경상북도포항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은 환자 진료를 위한 의료기기 구매 업무를 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은 직접 수행하고 공개경쟁 공고 및 계약은 매년 ☆☆☆☆☆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의료법」 제23조의5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 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이란 의료기기 거래금액을 거래가 있는 날(의료기기가 기관에 도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에는 [표]와 같이 거래금액의 일정 비율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표] 거래금액 결제 조건에 따른 의료기기 비용할인

구분	1개월 이내에 결제	2개월 이내에 결제	3개월 이내에 결제
거래금액 할인율	1.8% 이하	1.2% 이하	0.6% 이하

따라서 의료원은 허용하고 있는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적용을 검토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서 등에 할인 규정을 명시하고 계약 상대방과 협의하는 등 의료기기 구매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의료원에서는 [붙임]과 같이 2023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 등 59개, 1,104,919천 원의 의료기기를 구매하면서 수의계약 시에 관련 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계약 체결하였고 위탁기관인 ☆☆☆☆☆을 통한 입찰 공고 시 내용에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기재는 하였으나 해당 조건을 계약서 등에 명시하지 않아 의료기기를 3개월 이내에 결제하고도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그 결과, 의료원은 의료기기 구매 시 계약서 등에 할인규정을 반영하고 1개월 이내에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추가 할인을 통해 최대 19,888천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이를 활용하지 못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포항의료원장은**

앞으로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비용 할인 규정을 적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붙임]

경상북도포항의료원 의료기기 구매현황

“생략”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 구매 계약기간 연장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포항의료원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포항의료원(이하 “포항의료원”이라 한다.)은 2025. 11. 14. 경상북도 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2025년도에는 포항·김천·안동 의료원에서 □□□ 구매 계약을 개별로 추진하였으나 예산절감 등을 위해 내년에는 3개 의료원이 공동구매 방식으로 변경하라’고 지적함에 따라 3개 의료원을 대표하여 2026년도 □□□ 공동구매를 추진<sup>5)</sup>하였다.

포항의료원 「회계규정」 제3조에 따르면 병원의 회계연도는 경상북도 일반회계 연도와 같이 한다고 되어 있고 경상북도는 「지방회계법」 제6조에 따라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고 되어 있다.

포항의료원 「회계규정」 제2조에 따르면 이 규정 등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계약법」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는 태풍, 홍수, 지진, 화재 등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의 발생

5) □□□ 구매는 2025년도에는 3개 의료원이 개별로 계약을 추진하였으나 2023년도 및 2024년도에는 3개 의료원이 공동으로 계약을 추진하였음. 공동 계약 추진시 2023년에는 안동의료원에서 2024년도 김천의료원에서 나머지 의료원을 대표하여 계약 추진하여 2026년도에는 포항의료원에서 □□□ 공동구매를 대표하여 추진하였음.

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른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계약법」 제23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임차·운송·보관 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이라도 그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포항의료원은 계약기간을 정할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태풍, 홍수 등 계약상대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의 발생이 아니라면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서는 아니되고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은 회계연도 시작 전인 12월말까지 미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했다.

한편, 2025. 11. 14. 이후 포항의료원은 3개 의료원을 대표하여 2026년도 □□□ 공동구매를 추진하면서 기존에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직접 입찰하였으나 지방출자·출연기관 계약사무 위탁 전문기관인 ☆☆☆☆☆을 통해 수수료를 지급하고 입찰공고 등 계약 사무를 위탁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포항의료원에서는 □□□ 구매는 의료기관 특성상 중단할 수 없으므로 2025년 12월말까지 미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감독기관인 경상북도<sup>6)</sup>와 3개 의료원 간의 계약 방식을 합의하고 입찰 소요기간을 미리 알아보았어야 하나 2025. 12. 8. 계약 위탁기관인 ☆☆☆☆☆에 위탁 요청하였으며 2025. 12. 9. ☆☆☆☆☆의 회신 공문을 통해서야 ‘계약체결 예정일은 2026. 2. 27.으로 2025. 12. 31.까지 신규 계약 체결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25. 12. 10. 정도(날짜 미상)에 경북도 감독부서인 ♣♣♣♣과에서 포항의료원에게 유선으로 위탁 수수료 부담 등의 문제로 계약사무 위탁을 중단하고 직접

6)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2025. 11. 14. 행정사무감사 등 수차례 회의시에 경상북도 공공의료과에 3개 의료원의 □□□ 구매와 관련하여 지적한 상황으로 포항의료원은 경상북도 공공의료과와 관련사항을 공유하는 사항이었음.

입찰하도록 요청함에 따라서 의료원은 2025. 12. 11. ☆☆☆☆☆에 공문으로 계약 사무 위탁을 취소하였다.

2025. 12. 12. 도 공공의료과 및 3개 의료원 관계자가 모여 □□□ 구매 계약 방식을 논의한 결과 계약 사무를 ☆☆☆☆☆에 위탁하기보다는 직접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포항의료원은 12월말까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 12월 중순경에는 입찰공고를 실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5. 12. 12. 기준으로 각 의료원별 □□□ 품목 내역만 작성한 상태였으며 공동 입찰을 위한 품목 내역의 단일화 등 필요한 정리 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포항의료원은 2025. 12. 12. 회의에서 2025년 □□□ 입찰 소송 대응 등을 위해 공동구매 대표기관을 다른 의료원에서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김천의료원은 2025. 12. 17. 공동구매 대표기관으로 입찰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입찰품목 정리, 사전규격 공개, 입찰공고, 누락 □□□ 추가에 따른 재공고, 적격심사 등 입찰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26. 2. 13.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포항의료원은 법규정에서 정한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되지 않는데도 □□□ 구매 계약체결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유로 2025. 12. 10. 2025년도 □□□ 구매 계약업체인 ◇◇◇◇◇에 기존 계약기간인 2025. 1. 6. ~ 2025. 12. 31. 에서 2025. 1. 6. ~ 2026. 2. 28.로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2025. 12. 31. 계약기간 연장<sup>8)</sup>을 하였다.

7)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을 위해서는 3개 의료원별로 각각 작성된 □□□ 내역을 품목별 단가, 보험 코드 등을 확인하고 단일화 하는 작업이 필요함

8) 김천·안동 의료원도 같은 사유로 2026. 2. 28.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였으며 김천의료원 923,994천 원, 안동의료원 144,619천 원을 대금지급 하게 되었다.

그 결과 포항의료원은 2026. 1월부터 2월까지 □□□ 구매가 연장됨에 따라  
대금 278,705천 원을 2025년도 계약업체인 ◇◇◇◇◇에 지급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포항의료원장은

- ① □□□ 구매와 같이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은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사전 계약을  
체결하고, 법령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관련자 CCC는 **훈계**(의료원 규정상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예산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포항의료원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포항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IV.예산구조 및 과목내역 ④지출예산 과목내역(목·세목)에 따르면 전산프로그램 등의 자산을 유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소비되는 비용(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비용도 포함)은 “수선유지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공기구비품 구입비 및 그 취득부대경비 중 내용년수가 5년 이상이거나 품목별 개별 취득원가가 100만원이상인 공구, 기구 및 비품구입비는 “자산취득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해당하는 전기료, 가스료, 상·하수도료는 “공공운영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 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서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③ 업무추진비(각 업무추진비 공통)업무추진비의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따르면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를 위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 가. 해당 지방의회,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와의 공동행사,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및 식사 제공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원에서는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에 관한 예산과 인테리어 조각상 구매 비용은 소모품비가 아닌 각각 수선유지비와 자산취득비로 집행하여야 하고, 도시가스사용료(식당)의 경우 급식재료비가 아닌 공공운영비(연료비)로 집행하는 등 예산 편성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했다.

또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특산품(기념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급관리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고 업무추진비로 의례적인 화환·화분, 축의·부의금품, 명절선물 및 격려품을 제공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지급대상의 적정성을 확인 후 집행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의료원에서는 [표 1]과 같이 감사대상기간(2023년 10월 ~ 2026년 1월) 중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관련 비용(9건, 18,977천원)과 인테리어 조각상 구매 비용(1건, 2,537천원)을 소모품비로, 도시가스사용료(식당) 14,226천원(28건)을 급식재료비로 지출하면서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세목별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1] 예산(소모품비·급식재료비) 부적정 집행 현황

구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소모품비	10건, 21,514천원	1건, 1,430천원	5건, 16,945천원	3건, 1,709천원	1건, 1,430천원
급식재료비	28건, 14,226천원	3건, 1,450천원	12건, 6,190천원	12건, 6,042천원	1건, 544천원

※ 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아울러 감사기간(2023. 10월 ~ 2026년 1월) 중 의료원의 업무추진비 명절선물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표 2]와 같이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범위가 아닌 관할 구역 외 기관장, 전 임원, 민간기업 등에게 명절선물을 지급하였으며(4건, 5,697천 원), 특히 2024년 설·추석 명절에는 지급대상자가 아닌 민간기업, 각종 단체 및 개인 등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

**[표 2]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현황**  
**“생략”**

또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특산품(기념품 등)을 구입해오고 있음에도 지급품의 공문 이외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이 기재된 관리대장을 별도로 구비하지 않아 분실 또는 사적 사용 우려가 발생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포항의료원장은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복무관리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포항의료원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포항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부에서는 의료원 「복무규정」, 「휴직자 복무관리 규칙」 등에 따라 임직원의 복무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의료원 「휴직자 복무관리 규칙」 제7조(휴직 중 복무상황 점검)에 따라 ○○부장은 휴직자가 제출한 복무상황신고서 및 관련 증명자료, 휴직자의 구술 내용 또는 그 밖에 수집된 자료 등을 근거로 매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복무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복무규정」 제19조(조퇴 및 외출)에 의하면 직원이 근무시간 중 외출을 하려고 할 때에는 소속 관리자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원 임직원들은 복무상황을 원장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복무총괄부서인 ○○부는 재직자의 복무상황 전반에 대한 관리 뿐만 아니라, 휴직자에 대한 복무 상황 점검도 규정에 맞게 실시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포항의료원 휴직자 복무관리 규칙」 제6조(휴직 중 복무상황 보고), 제7조(휴직 중 복무상황 점검)에 따라 의료원은 휴직자에 대한 복무관리를 반기 1회 이상 정기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나 규정상의 점검은 단 한 차례도 이루지지

않고 있었다.

또한 의료원은 2025년 10월까지 업무상 외출 수기대장으로 관리하면서 「복무규정」상 조퇴 또는 외출 신청 시 소속관리자의 사전 허가를 받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붙임]의 업무상 외출대장을 업무의 효율화라는 명목하에 사전결재가 아닌 사후결재 방식으로 운영해 왔으며, 작성된 업무상 외출대장에는 외출복귀 시간 누락(57건), 행선지 불명확 기재 등 하자가 다수 발견되었다.

이와 관련, 수기대장의 불편과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시스템(근태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직원 근태를 관리하면서 전자시스템 상 근태구분을 [표 1]과 같이 하였고, 「복무규정」에서 정한 ‘조퇴’, ‘지참’ 항목은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다.

[표 1] 포항의료원 전자시스템상 주요 근태 구분

(단위 : 원)

내부규정 상 근무상황부 종별	전자시스템 상 근태구분	비고
연차휴가	연가	복무규정상 ‘지참·외출·조퇴’는 전자시스템상 ‘반반휴’ 항목을 사용하여 운영
특별휴가	없음	
병가	병가, 병가(반)	
출산전·후 휴가	출산휴가	
유산·사산 휴가	기타(사유기재)	
가족돌봄휴가	기타(사유기재)	
포상휴가	없음	
공가	공가	
보건휴가	보건휴가	
정기검진휴가	기타(사유기재)	
회복휴가	기타(사유기재)	
수유시간	기타(사유기재)	
퇴직준비휴가	기타(사유기재)	
난임치료휴가	기타(사유기재)	
지참	없음	
조퇴 및 외출	없음	
무단결근	없음	

※ 자료 : 의료원 시스템 근태신청 화면 재구성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포항의료원장은**

- 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휴직자에 대한 복무관리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시고, 규정에 맞게 복무관리 시스템을 정비하시기 바라며. (시정)
- ③ 전 직원에 대하여 근태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출·퇴근, 연가 사용 등 복무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마약류 관리 업무 철저  
소 관 청     경상북도포항의료원  
관 계 부 서   ○ ○ ○ ○ ○  
내 용

경상북도포항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33조(마약류관리자)에 따라 소속 ♀♀ 2명을 마약류관리자<sup>9)</sup>로 지정하여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관리하고 있다.

### 1. 마약류관리자의 업무 소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의료기관용)」의 마약류 관리자의 업무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자는 병원 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총괄책임자로서, 병원 자체 마약류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규정에 따라 병원 내 모든 마약류 취급자(관리보조자 포함)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마약류 관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병원 내에서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야하고 마약류관리법 제50조(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에서 정하는 마약류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하며, 관리보조자를 정하여 일부 관리업무를 분장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9)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 [표 1] 마약류관리보조자의 업무

- 마약류 취급 장소별 또는 제품별, 종류별 마약류 사용, 보관, 보고(기록) 등 다음의 업무를 담당
  - 비상마약류의 보관·불출·재고관리·운반 등 업무보조
  - 유효기관경과, 반납,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보관관리 등 업무보조
  - 사고마약류 발생 시 신속보고 등
  - 기타 제반 마약류의 관리(저장시설 점검부 작성·관리) 등
- 마약류관리자가 실시하는 마약류 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의료기관용) 일부

그러나 의료원에서는 병원 자체 마약류관리규정을 작성·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마약류 관리자가 소속된 ○○부의 업무분장을 보면 일반부서와 동일하게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분장만 되어 있을 뿐 마약류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업무분장은 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마약류관리자는 응급실, 수술실, 각 병동 등에서 비상마약류를 관리하는 병원 내 모든 마약류취급자(관리보조자 포함)에 대하여 정기적 교육을 실시하고 그 준수여부를 점검해야 하나, 교육총괄부서인 △△부에서 점검하는 전직원 대상 특성화교육 및 법정필수교육으로 대체하고 있었고, 마약류관리자가 정기적으로 병원 내 마약류취급자(관리보조자 포함)가 교육을 실시하고 점검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

## 2. 마약류 저장시설 관리 부적정

마약류관리법 제15조(마약류의 저장)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 마약류 취급 승인자 등은 마약류를 다른 의약품과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하고 마약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마약류의 저장)에 따르면 마약류의 저장 장소는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의 업소 또는 사무소 안에 있어야 하고, 마약류 저장 시설은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마약은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금고(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를 포함한다)에 저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2026. 3. 9. ~ 3. 13.) 중 의료원의 모든 마약류 저장 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사진 1]과 같이 ◎◎실 병동에는 마약 보관금고가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병동 내 업무용 책상 아래 설치되어 있었으며, 일부 병동에서는 [사진 2]와 같이 마약류 보관 금고가 설치되어 있는 ♣♣실의 문이 열려 있는 등 마약류의 도난 및 분실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표 2] 마약류 보관 장치 설치 현황



※ 자료 : 의료원 현장 확인(관련자 2인 이상 입회) 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포항의료원장은

- 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의)
- ② 병원 내 마약류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마약류 관리에 대한 업무분장 실시하시기 바라며, 마약 보관금고를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로 이동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외부강의 및 겸직허가 운영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포항의료원  
관 계 부 서 ○ ○ ○ ○ ○  
내 용

경상북도 포항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은 「복무규정」 제6조(겸직금지) 및 「임직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 제18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따라 소속 직원의 외부강의 등 대외 활동을 관리하고 있으며, 감사 대상기간(2023년 10월 ~ 2026년 1월) 중 신고된 외부강의는 [표 1]과 같다.

[표 1] 외부강의 신고 건수

(단위 : 건)

구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외부강의 신고	17	7	5	5	-

※ 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임직원의 겸직 제한)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상근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만 상근임원이 임명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서는 공직자 등은 외부강의등<sup>10)</sup>의 대가로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고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 활동은 사전신고가 아닌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여야 한다.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한 바,

의료원은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제18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서 외부강의등에 따른 사례금 한도, 신고기한(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사례금 신고사항, 제한횟수 등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의 겸직허가 심사시 참고사례에는 외부강의도 겸직의 일환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나 본연의 직무에 지장이 없거나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등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1회성으로 끝나는 경우 지속성이 없으므로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자료 및 영상 업데이트, 질의 답변 등 추가적인 노동시간의 투입이 요구되는 경우 지속성이 인정되므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원에서는 임직원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그 신고 절차와 사례금 신고사항, 제한횟수, 겸직허가 대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속 임직원의 복무관리를 해야 했다.

그런데 의료원 인사·복무를 총괄하는 ○○부에서는 외부강의를 하는 직원에 대해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무시하고 사전신고서 제출로 관리를

10)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 :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해오고 있으며, 별도의 증빙자료를 징구하거나 검직허가 대상 유무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있었고 [표 2]와 같이 일부 임직원의 경우 수개월 ~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외부강의를 해오고 있음에도 그에 따른 외부강의등 신고서 검토나 검직허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표 2] 검직허가 대상이나 외부강의등 신고서로 처리된 내역

성명	소속(당시)	신고사항	신고기간	신고사례금	비고
○○○	▲▲부	♡♡대학교 외부강의	2023. 3. 1. ~ 2024. 12. 31	3,600천원	월 4회
○○○	◇◇부	♣♣대학교 외부강의	2023. 9. 1. ~ 2025. 8. 31	미기재	월 4회
○○○	◇◇부	□□대학교 외부강의	2023. 9. 6 ~ 2023.12.13	3,045천원	월 4회
○○○	◇◇부	◇◇◇대학교 외부강의	2024. 3. 4. ~ 2024. 6. 14	1,740천원	월 4회
○○○	◇◇부	△△△△대학교 외부강의	2024. 3. 4 ~ 2024. 6. 14	2,610천원	월 4회
○○○	◇◇부	◎◎◎대학교 외부강의	2025. 3. 4. ~ 2025. 12. 27	1,740천원	월 4회
○○○	◇◇부	▽▽▽▽대학교 외부강의	2025. 3. 4. ~ 2025. 12. 27	2,610천원	월 4회
○○○	◆◆◆◆부	◆◆대학교 외부강의	2025. 9. 1. ~ 2027. 8. 31	오기	월 4회

※ 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검직허가 대상자가 지속적인 외부강의를 함에도 이에 대한 규정상 절차나 실제 외부강의등에 대한 검토 없이 당사자의 신고에 갈음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등 복무행정의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포항의료원장은**

- 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현재 검직허가를 받지 않고 잔여 기간이 남아 있는 외부강의 등에 대해서는 허가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시정)
- ③ 외부강의 등에 따른 검직 허가는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정비하여 병원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별관 ◆◆◆◆ 및 ▽▽▽▽▽ 구축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포항의료원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 포항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부에서는 「회계규정」 제2조에 따라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경상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포항의료원 별관 ◆◆◆◆ 및 ▽▽▽▽▽ 구축공사”를 아래 [표 1]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

[표 1] 공사 추진 현황

(단위 : 천 원)

사업명	구 분	도급자	계약금액 (변경)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예정일)	비 고
별관 ◆◆◆◆ 및 ▽▽▽▽▽ 구축공사	설계용역	(주)▲▲▲▲▲ ▽▽▽사무소 (대표 ◇◇◇ 외1)	754,138 (1,018,138)	22. 6. 21.	22. 6. 21.	23. 9. 27.	
	공사	(주)♣♣♣♣♣♣♣ (대표 △△△) ◎◎◎◎◎(주) (대표 ♠♠♠)	13,860,193 (14,981,230)	24. 6. 10.	24. 6. 13.	26. 6. 12.	60% (최상층 골조공사 진행중)
	건설사업 관리	(주)□□□□ ▽▽▽사무소 (대표 ☆☆☆)	544,424 (669,189)	24. 6. 19.	24. 6. 25.	26. 7. 9.	

※ 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 1. 설계용역 수의계약 부적정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입찰에 부쳐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르면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추정가격<sup>11)</sup>이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sup>12)</sup>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원에서는 추정가격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에 부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의료원 ○○부에서는 “포항의료원 ▽▽▽▽▽ 구축 설계용역”을 시행하면서 설계용역비 추정가격이 240,000천 원으로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지방계약법」에 따른 경쟁 가능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포항의료원 별관 ◆◆◆◆ 설계공모<sup>13)</sup>”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조항<sup>14)</sup>만을 근거로 2022. 10. 19. 별관 ◆◆◆◆ 설계공모에서 선정된 (주)▲▲▲▲▲▽▽▽사무소(대표 ◇◇◇◇ 외 1)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11)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해당 목적물의 규격서·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된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1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13) 우수한 품격과 품질 및 디자인의 선정을 위해 공공기관이 설계자 2인 이상으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 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14) 법정 ♠♠♠ 확보를 위한 추가예산 확보 시 ♣♣♣ 건립 설계를 당선 후 계약 체결된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입찰공고 포항의료원 제2022-♠♠호, 2022. △. △△.)

게다가 기 계약된 “포항의료원 ▽▽▽▽▽ 구축 설계용역”에 대한 계약의 해제·해지 절차 없이 계약내용을 별도로 진행중인 “포항의료원 별관 ◆◆◆◆ 설계용역”에 추가하는 설계변경<sup>15)</sup>을 2023. 2. 10. 시행하였다.

그 결과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정당한 자격을 가진 업체의 공정한 참여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2.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절차 미이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12절-제1관-2에 따르면 해당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의 추정금액<sup>16)</sup>이 1억 원 이상이며 타 공법과 비교하여 해당 공법 적용 시 명백한 예산 절감·공기 단축의 효과가 있거나 계약목적물의 완성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선정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에 추정금액 1억 원 이상의 신기술·특허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같은 기준 제1장-제12절-제2관 공법선정 절차에 따라야 하고, 그 절차를 보면 사업부서는 해당 신기술·특허 공법의 검토를 위해 한국국토교통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정보원 등 관련기관 제공자료 등을 활용하여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설계에 신기술·특허공법을 반영하려는 경우 해당 공사와 관련한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법선정 안내 공고에는 사업의 규모, 예정공사기간, 소요예산 등 사업 개요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공법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15) 설계용역 변경계약

가. 용역내용 : 당초)별관 ◆◆◆◆ → 변경)별관 ◆◆◆◆ + ▽▽▽▽▽ 구축

나. 계약금 : 당초)754,138천 원 → 변경)1,018,138천 원(증 264,000천 원)

16) 추정금액 : 추정가격 + 관급자재대(관급자설치관급자재 제외) + 부가세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평가 등을 통해 제안 참여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해당 계약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제안 중 정량적 평가분야와 정성적 평가분야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자의 공법을 1순위로 선정하고 공법 선정된 자와 제안된 공법에 대해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원에서는 건설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의 추정금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을 해당 공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의료원 ○○부에서는 “포항의료원 별관 ◆◆◆◆ 설계용역”을 추진 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추정가격 289,304천 원(제경비 미포함)인 압입강관말뚝공법 (PPP)<sup>17)</sup>을 공법선정위원회 심의 등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절차 이행 없이 설계에 반영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 및 시정조치 없이 설계용역을 2023. 9. 27. 준공 처리하였다.

그 결과 추정금액 1억 원 이상의 신기술·특허공법을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공법선정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3. 계약심사 절차 미이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 하는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는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 사전검토를 요청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의

17) 강관말뚝 압입장치 및 압입 강관말뚝 공법(특허 제10-1427340호)

사전검토를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원에서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의뢰 전에 조달청에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공사를 발주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의료원 ○○부에서는 “포항의료원 별관 ◆◆◆◆ 및 ▽▽▽▽▽ 구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조달청에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함에도 사전검토를 득하지 아니하고 발주하여 2024. 6. 10. 시공사<sup>18)</sup>와 계약하여 공사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공사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예산을 낭비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 4.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 건설공사의 시공을 관리하기 위하여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해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이하 “건설사업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sup>19)</sup>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9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계획에는 시공단계의 건설

18) (주)♣♣♣♣♣♣(대표 △△△), ○○○○○○○(주)(대표 ♠♠♠)

19)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사업관리방식, 건설사업관리<sup>20)</sup>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배치계획, 그 밖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따른 ① 건설공사명, 시행기관명, 건설공사 주요내용 및 총공사비 등 건설공사 기본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관리방식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배치계획 ④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여부 및 심의 결과 ⑤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 범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이하 “업무수행지침”이라 한다)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평가를 통해 사업관리방식<sup>21)</sup>을 배정하고 확정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의해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변경 제출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료원에서는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추진하는 경우 업무수행지침에서 정하는 평가를 통하여 적합한 건설사업관리 방식을 확정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의료원 ○○부에서는 “포항의료원 별관 ◆◆◆◆ 및 ▽▽▽▽▽ 구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연면적 6,827.64 제곱미터<sup>22)</sup>로서 공사 착공 전까지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0)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  
 21) 1. 평가점수(총점) 80점 이상 :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한다)  
 2. 평가점수(총점) 50점 이상 :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할 수 있다)  
 3. 평가점수(총점) 50점 미만 : 직접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할 수 있다)  
 22) 별관 ◆◆◆◆ : 3,610.83 제곱미터, ▽▽▽▽▽ 구축 : 3,216.81 제곱미터

그 결과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점수(총점)가 82점으로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주)□□□□▽▽▽사무소(대표 ☆☆☆)와 「건축법」에 따른 건축감리용역 계약을 2024. 6. 19. 체결하여 상기 공사에 대한 감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5.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업무 부적정

### 가. 안전관리비 미반영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르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sup>23)</sup>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sup>24)</sup>(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공사금액에 계상<sup>25)</sup>하여야 하며,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원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 건설사업자의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 
- 23)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6.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향타 및 향발기, 타워크레인의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7.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흠막이 지보공 등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8.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지자체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24)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또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비용, 안전점검 비용,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 법 제62조제1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비용
- 25)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예정가격작성기준」(계약예규)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비를 공사원가계산서에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계상(「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그런데도 의료원 ○○부에서는 “포항의료원 별관 ◆◆◆◆ 및 ▽▽▽▽▽ 구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관련 규정 검토를 소홀히 하여 안전관리비가 미 계상된 상태로 공사를 계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안전관리비 계상 없이 공사를 추진함에 따라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나. 안전관리계획 미승인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르면 지하 10미터를 굴착, 높이 2미터 이상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공사, 천공기, 향타 및 향발기, 타워크레인 등의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원에서는 건설사업자로부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으면 20일 이내에 내용을 검토하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의료원 ○○부에서는 “포항의료원 별관 ◆◆◆◆ 및 ▽▽▽▽▽ 구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여 높이 2미터 이상의 흙막이

지보공을 시공하고 천공기, 향타 및 향발기 등의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등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임에도 시공자로부터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착공 전 별도의 검토·심사·통보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공사현장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해당 법령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다.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미이행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 따르면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높이가 31 미터 이상인 비계, 브라켓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 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 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높이가 10 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 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 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 전문가”라 한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시공상세 도면,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 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원에서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건설사업자로부터 시공상세도면, 구조계산서 등을 제출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의료원 ○○부에서는 “포항의료원 별관 ◆◆◆◆ 및 ▽▽▽▽▽ 구축공사”를 추진하면서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을 시공하는 공사임에도 시공자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없이 공사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가설구조물의 안전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등 건설공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해당 법령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6.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업무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대하여 시험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은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확정하여 건설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업무수행지침」 제60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원에서는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가 시험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면 그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이 적정한지 심사하고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의료원 ○○부에서는 “포항의료원 별관 ◆◆◆◆ 및 ▽▽▽▽▽ 구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로서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사임에도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계획을 미승인하는 등 품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계획을 적절히 수행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해당 법령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7. 실정보고 승인 절차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제6절에 의하면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하지만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업무수행지침」 제67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여 필요 시 기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공사 시행과정에서 현지여건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확인하여 필요 시 기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를 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 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설계변경을 완료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의료원 ○○부에서는 “포항의료원 별관 ◆◆◆◆ 및 ▽▽▽▽▽ 구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아래 [표 2]과 같이 시공자로부터 제출된 16건의 실정보고<sup>26)</sup>건에 대하여 업무수행지침에 따른 승인규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였다.

[표 2] 실정보고 현황

(단위 : 천 원)

연번	건 명	증감액 (제경비 포함)	요청일 (실정보고)	기술검토 의견서 제출일	승인일	실시공일
	계	1,195,860				
1	별관동 주변 ♣♣♣♣ 이식	26,576	24.10.04.	24.11.04.	-	24.11.08.
2	기존 ◇◇◇◇◇ 철거	3,476	24.01.14.	25.01.15.	-	25.02.14.
3	△△△ 터파기 및 소운반	19,074	25.02.26.	25.02.26.	-	25.03.21.
4	♣~♣층 ◇◇◇◇부위 철거	15,730	25.02.26.	25.02.26.	-	25.03.03.
5	●●●● ◇◇◇◇ 증가	67,582	25.05.14.	25.05.27.	-	24.12.26.
6	신설 ◎◎◎구간 ♣♣♣♣ 시공	61,811	25.05.15.	25.06.04.	-	25.03.06.
7	■층 ▼▼▼▼ 추가 설치	1,845	25.07.18.	25.07.22.	-	25.08.08.
8	☆☆☆☆☆ 수량 증가	4,499	25.08.28.	25.08.28.	-	25.08.30.
9	△△△ 기존기초 ◇◇◇◇◇ 시공	96,030	25.09.15.	25.10.10.	-	25.05.14.
10	건설용♣♣♣♣ 설치	24,717	25.10.15.	25.10.16.	-	25.11.13.
11	△△△△ 추가	35,090	25.09.25.	25.10.17.	-	25.10.24.
12	◎◎◎◎◎ ▽▽▽▽증가	271,920	25.10.15.	25.10.31.	-	25.06.18.
13	☆☆☆☆☆ 사양변경	6,710	25.11.11.	25.11.12.	-	25.11.20.

26) 공사 시행과정에서 현지어건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서면으로 검토의견 등을 발주청에 설계변경 전에 보고하고 발주청으로부터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받는 행위

연번	건 명	증감액 (제경비 포함)	요청일 (실정보고)	기술검토 의견서 제출일	승인일	실시공일
14	▼▼▼▼변경	421,388	25.12.09.	25.12.09.	-	25.12.26.
15	◆◆복구공사	96,870	25.12.08.	25.12.10.	-	25.12.15.
16	●●페인트 시공방법 변경	42,542	25.12.09.	25.12.12.	-	25.12.23.

※ 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현지여건의 변경이나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개선사항의 검토 등 승인규정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선시공 되어 건설공사의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해당 법령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였다.

## 8. 공사원가 과다계상 등 공사관리 업무 소홀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 및 「업무수행지침」 제4조, 제138조, 제142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공사의 설계 도서·계약서 그 밖에 관계 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독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설계도면·시방서와 자재의 사용 및 시공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설계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원에서는 건설공사 발주자로서 건설 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고, 적절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된 공정은 설계 변경하여 감액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의료원 ○○부에서는 “포항의료원 별관 ◆◆◆◆ 및 ▽▽▽▽▽ 구축공사”에 대한 예정가격 결정 시 칠 공사 중 페인트칠의 경우 모르타르 미장 마감면에 바탕만들기를 중복적용하여 13,204천 원(제경비 포함), 토공사 중 기계 터파기의 경우 지반조사보고서<sup>27)</sup>와 상이한 연암을 과다 적용하여 26,145천 원(제경비 포함), 토공사 중 잔토처리(토사) 단가<sup>28)</sup> 과다 적용으로 116,969천 원(제경비 포함) 등 총사업비 156,318천 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계상되었음에도 설계도서의 수정·보완 없이 설계용역을 준공 처리하였고,

미장공사 중 모르타르 바름(바닥)의 경우 모르타르 타설 장비를 이용하여

27) 해당 계약의 설계를 위한 지반조사 보고서(2023. 4.)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용역을 위한 지반조사 보고서(2024. 2.)

28) 24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771원을 7,710원으로 적용(관 부설시 터파기와 되메우기후 잔여 토사를 운반거리 20m 이내의 지정장소에 버리는데 소요되는 비용)

바닥 모르타르를 타설함에도 인력시공으로 적용하여 10,737천 원(제경비 포함), 중급품질관리자 활동비를 중복적용하여 47,760천 원, 토공사 중 바닥면고르기를 미시공하여 49,368천 원(제경비 포함), S.G.R공사 중 토사천공 길이를 미정산하여 6,738천 원(제경비 포함) 등 사업비 114,603천 원(제경비 포함)을 과다하게 적용되었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이나 감액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단가기입 오류, 물량과다 산정 및 불필요한 공정 추가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 270,921천 원(제경비 포함)이 과다하게 반영되는 등 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포항의료원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예정가격 작성 오류로 공사비를 과다 계상한 건축사에 대해서는 「건축사법」 제30조의3 등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건설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검토·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④ 실정보고 건에 대하여 검토·확인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승인규정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시공 전 설계변경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⑤ 과다 계상된 사업비 114,603,000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⑥ 착오로 인한 예정가격 작성 오류 사항은 예산낭비가 없도록 「민법」 제109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등 적절한 조치방안을 검토 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⑦ 관련자 DDD, EEE은 의료원 「인사규정」 제51조에 따라 중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